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 審 査 報 告 書

2005. 11. 1.  
제244회 임시회

##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0월 12일
- 회부일자 : 2005년 10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5. 10. 25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산림의 공익기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전제 조건임에도 국유림을 활용한 육림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분수국유림 제도의 중단으로 더 이상 국유림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도유림과의 집단화 및 경제림조성이 적합한 사유림을 매입하고자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33회 도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 매입하려던 임야가 국유림관리소 등에 이미 매각되거나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 매입하려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 재산의 취득 : 공유임야 확대조성 》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3번지 등 6개 지역
- 재산규모 : 2,540,325 m<sup>2</sup> (254ha)
- 사업기간 : 2005. 하반기
- 사 업 비 : 3,142백만원(도비)

### ※ 주요 변경사항

- 당 초

(단위:ha,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재산가액
	계	3지역		202	3,000,000
1	괴산 사리 방축	산28-12	임야	117	2,160,000
2	괴산 장연 오가	산44외1	임야	43	280,000
3	음성 음성 한별	산95	임야	42	560,000

- 변 경

(단위:ha,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재산가액
	계	6개지역		254	3,142,000
1	괴산 연풍 분지	산3	임야	33	366,000
2	제천 송학 시곡	산67-1등2	임야	48	551,000
3	괴산 청천 금평	산16-1등3	임야	138	1,825,000
4	괴산 청천 운교	산24	임야	10	63,000
5	괴산 청천 월문	산32-1	임야	9	123,000
6	청원 미원 화원	산79	임야	16	214,000

### 3. 검토보고 요지

####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수익금으로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내지 산림경영의 효율성 있는 면적이 큰 산림 등 도유재산으로서의 증식 가치가 있는 산림을 매입하려는 것임.
- 분수국유림 관리는 지난 79년부터 산림청장과 분수림 설정계약을 맺어 우리 도가 국유지에 조림, 육림 등 산림 경영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청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며, 현재 27필지 10,044ha가 있음.

## ※ 분수림제도란?

- ▶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조림을 할 때에는 산림청장과 분수림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조림, 육림 등 산림경영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목을 국가와 수익을 분배하는 제도.
- ▶ 수익금 분배는 평균 산림청 16%, 우리도 84% 정도임.

## ※ 우리도 분수국유림 관리현황

- ▶ 면 적 : 27필지 10,044ha(국립공원 7,424, 일반지역 2,620)
    - 제천 6,858ha, 괴산 2,552ha, 단양 634ha
  - ▶ 설정기간 : '79년 ~ 2010년
    - '58년 조림대부지에서 '79년 산림법개정으로 분수림 설정계약
- 이러한 분수국유림의 계약기간이 당초 2010년까지 였으나, 산림청은 국가 산림경영권 확보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02년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동안 경영해온 분수국유림의 수익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분배해오고 있음.
- 이에 우리 도는 분배수익금으로 지난해까지 5,895ha에 해당하는 61억원을 분배받았으며, 올해에는 나머지 4,149ha에 해당하는 35억원의 수익금 분배가 예상되고 있음.
- 우리 도의 분수국유림의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속리산 등 국립공원지역에 분포하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목관리에 있어서도 적잖은 제약과 어려움을 감내해 왔기 때문에 비록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해지를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는 것은 일응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짐.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 분수국유림 수익금 30억원을 투자하여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번지 등 4필지 202ha를 매입하려는 도유임야 확대조성계획을 의결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투.융자심사, 예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최근 지역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해 산주가 요구하는 실거래가격과 감정예상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결국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득이 매입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것임.
- 사업규모에 있어서는 총 9필지로서 면적은 당초 202ha보다 52ha가 증가된 254ha이며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와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에 소재한 임야는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는 적게는 500m에서부터 3km정도 떨어진 임야이며, 사업비는 당초 30억원에서 1억 4,200만원이 늘어난 31억 4,200만원임.
- 검토결과, 분수국유림 계약해지에 따른 도유림 관리면적 감소분에 대해 대체산림을 매입하여 도유림 재산 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도모하려는 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최근 산림청 역시 국유림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매매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 매입대상 임야에 대한 산주의 매도의사 확인과 매입가격 사전협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아울러 변경매입예정지의 개략적인 현황, 즉 기존 도유림과의 집단화 정도, 묘지나 전신주 분포현황, 경제림 조성계획(수종 등), 그리고 앞으로 활용계획과 재산가치적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보충적 설명이 필요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47

제출연월일 : 2005년 10월 1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산림의 공익기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전제 조건임에도 국유림을 활용한 육림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분수국유림 제도의 중단으로 더 이상 국유림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도유림과의 집단화 및 경제림조성이 적합한 사유림을 매입하고자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33회 도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 매입하려던 임야가 국유림관리소 등에 이미 매각되거나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 매입하려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 공유임야 확대조성 》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3번지 등 6개 지역
- 재산규모 : 2,540,325㎡(254ha)
- 사업기간 : 2005. 하반기
- 사업비 : 3,142백만원(도비)

※ 주요 변경사항 : 매입 대상지 및 면적, 사업비

■ 당 초

(단위:ha,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재산가액
	계	3지역		202	3,000,000
1	괴산 사리 방축	산28-12	임야	117	2,160,000
2	괴산 장연 오가	산44외1	임야	43	280,000
3	음성 음성 한별	산95	임야	42	560,000

■ 변 경

(단위:ha,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재산가액
	계	6개지역		254	3,142,000
1	괴산 연평 분지	산3	임야	33	366,000
2	제천 송학 시곡	산67-1등2	임야	48	551,000
3	괴산 청천 금평	산16-1등3	임야	138	1,825,000
4	괴산 청천 운교	산24	임야	10	63,000
5	괴산 청천 월문	산32-1	임야	9	123,000
6	청원 미원 화원	산79	임야	16	214,000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출자취득	출자처분	비 고
계	3,142,000	-	-	-	
○ 도유임야 확대조성	3,142,000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li> <li>2 ~ 5호 생략</li> </ol>